

18.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(안)입법예고

행정자치부공고제1998-128호 1998. 12. 14

개 정 이 유

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연관조항을 개정하고,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규제조항을 폐지 또는 개선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수립시 중앙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으나 법에서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만 거친후 확정토록 함.
- 나.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변경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함.
- 다. 농어촌 주택조합원의 자격중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있는 주택조합 건설예정지에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하고자 할 때에 자격을 주던 것을 본적지나 연고지에 관계없이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함.
- 라.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임의로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가입을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주축법을 준용하도록 함.
- 마. 법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행위 등의 제한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

주택회보